

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년)여부 공시 대상] : 해당없음

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 대상]

보고서 코드	회사 코드	펀드명1(운용펀드)	펀드명2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코드 (투자자펀드)	발생일 자	비율산정 대상구분	오류 내역
GSMA	A01018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더드림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(종류A)	KR5210A65706	KR5219786732	20171202	산정대상	
GSMA	A01018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더드림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(종류C-e)	KR5210A65706	KR5219786740	20171202	산정대상	
GSMA	A01018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C3)	KR5210A65706	KR5210964080	20171202	산정대상	
GSMA	A01018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C4)	KR5210A65706	KR5210964098	20171202	산정대상	
GSMA	A01018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C5)	KR5210A65706	KR5210964106	20171202	산정대상	
GSMA	A01018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코어셀렉션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A1)	KR5210A65706	KR5210998815	20171202	산정대상	
GSMA	A01018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코어셀렉션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C-e)	KR5210A65706	KR5210998872	20171202	산정대상	
GSMA	A01018	신한BNPP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(종류C2)	K55210BG7689	KR5210996082	20171207	산정대상	
GSMA	A01018	신한BNPP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[주식혼합](종류C4)	K55210BG7689	KR5210AO3822	20171207	산정대상	
GSMA	A01018	신한BNPP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[주식혼합](종류C2)	K55210BG7689	KR5210AO3806	20171208	산정대상	
GSMA	A01018	신한BNPP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(종류C3)	K55210BG7689	KR5210996074	20171221	산정대상	

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[이행계획 공시]

보고서 코드	회사 코드	모자형 해당여부	펀드명 1 (운용펀드)	펀드명 2 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코드 (투자자펀드)	근거법률	설정일	소규모 펀드가 된 시점	정리계획	정리 예정일	오류 내역
GSMC	A01018	Y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코어셀렉션 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 [주식](종류C-e)	KR5210A65706	KR5210998872	자본시장법	20110923	20171202	모펀드교체	20171222	
GSMC	A01018	Y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더드림코브릭스증권 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(종 류C-e)	KR5210A65706	KR5219786740	자본시장법	20110923	20171202	모펀드교체	20171222	
GSMC	A01018	Y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자 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C4)	KR5210A65706	KR5210964098	자본시장법	20110923	20171202	모펀드교체	20171222	
GSMC	A01018	Y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더드림코브릭스증권 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(종 류A)	KR5210A65706	KR5219786732	자본시장법	20110923	20171202	모펀드교체	20171222	
GSMC	A01018	Y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자 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C5)	KR5210A65706	KR5210964106	자본시장법	20110923	20171202	모펀드교체	20171222	
GSMC	A01018	Y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자 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C3)	KR5210A65706	KR5210964080	자본시장법	20110923	20171202	모펀드교체	20171222	
GSMC	A01018	Y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코어셀렉션 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 [주식](종류A1)	KR5210A65706	KR5210998815	자본시장법	20110923	20171202	모펀드교체	20171222	



(4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이행실적 공시]

보고서코드	회사코드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명 (운용펀드)	효력발생일 (등록일)	최초설정일	소규모펀드가 된 시점	정리방법	정리일자
GSMC	A01018	K55210BO8976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20110923	20110923	20171202	모펀드교체	20171222

(5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이행실적 공시(세부)]

보고서 코드	회사코드	모자형 해당여부	펀드명1 (운용펀드)	펀드명2 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코드 (투자자펀드)	근거법률	정리일자
GSMC	A01018	Y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코어셀렉션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C-e)	KR5210A65706	KR5210998872	자본시장법	20171222
GSMC	A01018	Y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더드림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(종류C-e)	KR5210A65706	KR5219786740	자본시장법	20171222
GSMC	A01018	Y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C4)	KR5210A65706	KR5210964098	자본시장법	20171222
GSMC	A01018	Y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더드림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(종류A)	KR5210A65706	KR5219786732	자본시장법	20171222
GSMC	A01018	Y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C5)	KR5210A65706	KR5210964106	자본시장법	20171222
GSMC	A01018	Y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C3)	KR5210A65706	KR5210964080	자본시장법	20171222
GSMC	A01018	Y	신한BNPP좋은아침설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P좋은아침코어셀렉션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A1)	KR5210A65706	KR5210998815	자본시장법	20171222



(6)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비율 공시]

보고서코드	회사코드	공모추가형 펀드수(운용펀드기준)				소규모 펀드수				소규모펀드비율 (=H/D)	제출기준일
		전체 (A)	부실자산 펀드수 (B)	(구)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개인연금펀드 (C)	차감 계 (D=A-B-C)	전체(A)	부실자산펀드 중 소규모 펀드(F)	(구)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개인연금펀드 중 소규모펀드 (G)	차감 계 (H=E-F-G)		
GSMC	A01018	94	14	0	80	17	14	0	3	3.75	20171231

*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(이행계획 공시, 이행실적 공시, 소규모펀드 비율 제외)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